

「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1월 1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0년 11월 2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행정과 주민의 연결고리 역할을 도맡고 있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복지 증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각종 지원 혜택을 명문화하고 추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이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 활동 여건 보장
- 이장 건강검진 지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

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

○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으로

안 제4조에서는 이장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부재 시

직무대행자에게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

안 제6조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한 지원에서는 건강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인

직무대행자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부분은

기존 조례 제3조제3항(이장은 질병 또는 지역 출타 등으로

장기간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·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.)과 관련하여

직무대행자의 실비변상 규정 근거 부족을 보완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

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한 건강검진 지원의 강원도 내 입법례는

7개 군(홍천, 영월, 정선, 양구, 고성, 양양, 인제) 으로 확인되며

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○ 다만,

우리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
“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”과

“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”에

따라 자치법규에 위임된 이·반장 관련 조례가 아래와 같이 4개의 조례로
제정 시기에 따라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
- ▶ “평창군 읍·면·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”,
“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”,
“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”, “평창군 반 설치 조례”

입법 경제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

“향후 1개의 조례로 통·폐합하여 운영함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.

강원도 내 입법례는 최근 2019년 인제군이

상기 4개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제정한바 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구역 안에서의 면장”을 “구역 안에서 읍·면장의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선도하여야”를 “이끌어야”로 한다.

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이장이 질병·장기간 출타 외 기타사유로 이장으로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시,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, 월정수당과 실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이장의 임무) ① 이장은 리 구역 <u>안에서의 면장</u>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조(복무)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,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<u>선도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4조(실비변상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이장의 임무) ① ----- 구역 안에서 읍·면장의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복무) ① ----- 이끌어야 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실비변상)</p> <p>① ~ 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이장이 질병·장기간 출타 외 기타사유로 이장으로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시,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, 월정수당과 실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</p>

제6조(임무수행 등 지원)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가. 1. (생략)

나. 2. 상해보험가입

다. 3. ~ 9. (생략)

제6조(임무수행 등 지원) -----

-----.

라. 1. (현행과 같음)

마. 2.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

바. 3. ~ 9. (현행과 같음)